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3. 9. 26.(화) 14:00~17:3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기수(위원장), 강동진, 김태일, 목수현,
송석기, 이광표, 이상희, 이해은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구 서울역사」 현상변경	(공 개)
2	사적 「서울 독립문」 현상변경	(공 개)
3	「미사일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4	「구 부산측후소」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5	「함양 화과원 유적」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6	「속초 동명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심 의 사 항

1. 사적 「구 서울역사」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구 서울역사」 당해구역 및 「환구단」 주변에 GTX-B 노선을 건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서울역사」 당해구역 및 「환구단」 주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 노선 (이하 GTX-B) 노선을 건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가철도공단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구 서울역사」('81.9.25.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
 - 사적 「환구단」('67.7.15.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구 서울역사」 : 당해구역, 1구역(개별심의), 2구역(도시계획 조례)
 - 「환구단」 : 1구역(원지형 보존), 2구역(개별심의), 3구역(도시계획 조례)
 -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5m이격
 - 신청내용 : 지하 철도노선 통행 터널 굴착, GTX-B 서울역 정거장 신설
 - 터널 굴착
 - 지표면으로부터 49.3m(구 서울역사), 76m(환구단) 아래 굴착(NATM 굴착공법)
 - * NATM(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발파를 이용한 터널 굴착방식으로 천공, 발파, 버력처리, 지보재 설치 순으로 굴착하는 공법
 - 규모: 터널 높이 8.63m, 폭 11.98m (환구단 지하 동일)
 - GTX-B 서울역 정거장 신설(환승통로 포함)

- 제어발파공법, 지하철 1호선 정거장 서측면에 인접 설치(환승 연계)
- 개착정거장(지하 3층), 터널정거장(지하 2층), 환기구* 2개소, 환승통로
* 공사범위 중 문화재와 가장 인접: 환기구 개착구조부(40m이격)
- 외부출입구 : 기존 1호선 서울역 출입구 활용
- 피난계단 : 정거장 시종점 각 1개소

라. 참고사항

- GTX-A 조건부 가결 당시 조건('19.6.)
 - 공사단계에서 지하수위, 진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주기적 보고
 - 문화재 보존을 위해 관계전문가(토목, 구조) 자문받아 시행
- GTX-B 관련 다른 문화재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진행상황
 -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서울 숭례문, 덕수궁): 9.19.(화) 심의 결과 보류
 - 신청한 노선 선형의 불가피성, 대안 노선 가능 여부 검토하여 제시
 - 소음, 진동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보완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구 서울역사, 환구단): 9.26.(화) 심의
 - 사적분과위원회(서울 청계천 유적, 서울 한양도성): 10.11.(수) 심의 예정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10.19.(목) 심의 예정(서울 흥인지문)

마. 의결사항

- 보류
 - 지질, 토목, 구조 등 관계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방안 마련 후 재심의
 - 구성위원: ○○○, ○○○, ○○○
- 출석 9명 / 보류 9명

2. 사적 「서울 독립문」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서울 독립문」 및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독립문」 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일대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독립문」 ('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941번지
-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88.02.27.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일원
 - ※ 이격거리 : 15m(「서울 독립문」), 175m(「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 허용기준 : 문화재구역(「서울 독립문」) 및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세부내용 : 2023년 KBS 전국 노래자랑 개최를 위한 가설 시설물 설치
 - 설치기간 : 2023. 10. 23. ~ 24. (녹화일시 2023. 10. 24.(1일간))
 - 가설 시설물 크기
 - 무대: (W)26m×(D)9.6m×(H)1.2m, 목재
 - 무대 고정용 비계: (W)18m×(D)1.2m×(H)3.4m, 철물
 - 운영부스: 캐노피텐트 10개동
 - 문화유산 보호 대책: 「서울 독립문」 4면에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라. 참고사항

- 「서울 독립문」 과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일대 '서대문독립페스타'의 개최

(’23. 8. 12.~8. 15.) 계획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2023년도 제7차
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독립문을 가리지 않게 조정 필요
- 행사 내용이 문화재 가치를 저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할 것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화재, 훼손 등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3. 「미사일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 소장 「미사일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3.7.25.)를 거쳐 등록 예고한 「미사일록」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미사일록	1건	28.5 × 23	1896~1897 추정	○○○○○ ○○	○○○○○○ ○○○○○○ ○○○ ○○○○○○○○○○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1.3.~'21.11월) : '근현대문화유산 외교·통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22.10.14.) : 문화재 등록 신청(경기도 → 문화재청)
- ('23.5.25.)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3.7.25.)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4) 등록예고 : '23.8.10.~9.9.(30일간) *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5.25.)

- <미사일록>은 19세기 말 주미공사의 공적인 업무 기록으로 이범진의 대미
 외교 활동 내용과 당시 외교사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 내용은 워싱턴에 도착하기까지 약 2개월에 걸친 긴 여정에 대해 당시 이동

경로, 이동 방법 등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주미전권공사로서 각종 외교행사, 행정부와 의회, 워싱턴 기념비, 남북전쟁기념관 등의 문화시설과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여 역사적 의미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3.5.25.)

- <미사일록>은 이범진이 주미공사로 재직할 무렵 공사관의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이진호가 전사(轉寫)한 원본이자 유일본에 해당되며, 이범진의 주미공사 파견 과정 및 초기 활동을 밝혀주고, 당시 서구 열강에 파견되었던 조선(대한제국) 관리들의 주재국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확인해 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 19세기 후반 조선(대한제국)의 대 서구외교 및 미국 견문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가치가 있음.

○ ○○○○○○○○○ ○○○○○○ ○○○('23.5.25.)

- 워싱턴 주미조선공사관 근무 당사자가 남긴 기록이 적은 가운데 <미사일록>은 희소성 있는 자료이며, 해당 자료는 이범진 공사의 부임 경로와 미국 측 인사 접견내용 등 일자별 활동내용을 자세히 싣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범진의 미국 인식 및 개화가 절실히 필요한 조선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가치가 매우 높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검 토 사 항

4. 「구 부산측후소」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구 부산측후소」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구 부산측후소」(부산광역시 기념물 ‘부산지방기상청’)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신청(’22.1.5.)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2.8.8.)를 실시하고 지정 가치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부산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구 부산측후소
 - * 現 부산광역시 기념물 「부산지방기상청」(’01.10.25. 지정)
 -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복병산길32번길 5-11(대청동1가 9-305)
 - 소유자: 기상청
 - 건립시기: 1933년
 - 수량 및 구조: 1동(지상4층, 연면적 644.87㎡), 철근콘크리트구조
- (3) 검토사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 (4) 지정범위
 - 문화재구역: 건물 1동(지상 4층, 건물면적 295.87㎡, 연면적 644.87㎡)
 - 문화재보호구역: 9,145.1㎡, 임야 2필지(중구 대청동1가 9-305, -435)
- (5) 추진경과
 - (’22.1.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부산광역시→문화재청)
 - (’22.8.8.)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2.8.11.) 보완자료 제출요청(문화재청→부산광역시)
 - 요청사항: 건물 및 시설물 공사 등 변형이력, 시 기념물 지정 당시 관련 자료 등
 - (’23.4.14.) 보완자료 제출(부산광역시→문화재청)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2.8.8.)

- 구 부산측후소는 최초 설립 후 현재까지 기상관측 활동을 중단 없이 수행한 대표적 근대 기상관측시설로 평가됨. 1933년 신축·이전된 현재의 구 부산측후소는 서울 기상관측소와 함께 당시 철근콘크리트 구조, 모더니즘 양식으로 신축된 근대 기상관측시설의 형식을 보여주는 유이한 사례임.
- 일부 증축과 개보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한 상태임. 근대적 기상관측 시설로서의 역사성, 대표성, 희소성을 바탕으로 사적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칭은 '구 부산측후소'가 적절함.

○ 문화재위원 ○○○('22.8.8.)

- 구 부산관측소는 한국전쟁기를 포함하여 90년 동안 관측 기능을 이어온 곳으로, 부산 원도심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어 경관·장소적 가치 역시 큰 곳이라 할 수 있음. 또한 2001년 지방문화재 지정 이후 문화재로서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관리되었음. 따라서 사적으로의 승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거의 유사한 시기 건축되어 기능을 이어온 서울 기상관측소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서울 기상관측소의 사적 승격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2.8.8.)

- 현재 관측시설 중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기상관측소(국가등록문화재)의 여건과 구 부산측후소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역사성과 대표성, 희소성이 있어 사적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증축에 따른 부분변형,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사 포함 여부, 표준목 및 식물관측원 복원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사적 지정을 위한 가치판단 자료 보완 후 재심의

○ 출석 9명 / 보류 7명 제척 2명

5. 「함양 화과원 유적」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함양 화과원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 「함양 화과원 유적」(경상남도 기념물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신청(’21.8.23.)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3.29.)를 실시하고 지정 가치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함양 화과원 유적
 - * 現 경상남도 기념물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00.8.31. 지정)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백운산길 85-1 일대(백전면 백운리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1, 48, 49, 50)
 - 소유자: 재단법인 대각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대각사)
 - 시대/연대: 일제강점기 / 1927~1953년
 - 수량/면적: 14필지 / 13,838m²
- (3) 검토사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 (4) 지정범위: 문화재구역 13,838m²(14필지)
- (5) 추진경과
 - (’21.8.23.):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경상남도→문화재청)
 - (’23.3.29.):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3.4.5.): 보완자료 제출요청(문화재청→경상남도, 함양군)
 - 요청사항: 발굴조사 최종 현장보고 관련 내용, 유적 내 발굴된 백자가마 관련 보고서
 - (’23.4.13.): 보완자료 제출(함양군→문화재청)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3.29.)

- 현 상황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함. 화과원의 의미는 단순히 불교 도량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있음. 현재 함양군과 대각회는 화과원에서의 과일 재배와 자기 생산을 재원 마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지는 못했음. 사적 지정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확실한 기록과 연구 성과 축적이 선행되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23.3.29.)

- 함양 화과원 유적은 역사와 종교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어 보존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역사성과 장소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연구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근대사적의 경우, 개항기 이후 근현대 건축양식과 재료를 사용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형 건축물'을 중심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허지인 화과원 유적의 사적 지정 여부는 사적분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문화재전문위원 ○○○('23.3.29.)

- 정밀발굴조사 등을 통해 유적의 실체가 구체화되어 백용성 스님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장소로서 어느 정도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확인된 여러 유적 중 상당수는 아직까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음. 또한 백용성 스님과 화과원에 대해 다양한 구술자료 등이 전해져오고 있기는 하나 현존 유적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 부족함.
- 당시의 건축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점(点)단위의 개별 건축물에 초점을 맞춘, 소위 '근대 사적' 보다는 현재의 기념물과 같이 면(面)단위로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됨.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보류

- 근대사적 지정을 위한 가치판단 자료 보완 후 재심의

○ 출석 9명 / 보류 8명 기권 1명

6. 「속초 동명동 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속초 동명동 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1.16.)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6.4.) 및 보완조사('23.7.21.)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속초 동명동 성당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로7길 10-5(동명동 332)
 - 소유자 : ○○○○ ○○○○ ○○○○
 - 수량 : 1동(지상 1층)
 - 건립시기 : 1953년 8월
 - 구조 및 규모 : 석재 조적조 및 목조트러스 지붕(280.20㎡)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문화재청)
 - ('20.6.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8.25.)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등록 검토 '보류'
 - 추가 자료 조사 필요(내부 증축구조 및 지붕재 변화 등)
 - ('20.9.5.) :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등록 검토 결과 통보
 - ('21.8.27.) : 등록 검토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속초시 → 문화재청)
 - ('23.2.17.) : 등록 검토에 따른 추가 보완자료 제출(속초시 → 문화재청)
 - ('23.7.21.) : 관계전문가 보완조사 실시

- ('23.7.24.)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증축부 건축물대장, 증축부 건축 재료 및 공사 관련자료 등
- ('23.8.8.) : 보완자료 제출(속초시 → 문화재청)

라. 보완조사 의견(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 '23.7.21.)

- 6·25전쟁 기간 중 수복 지역에 건립되었던 성당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교회사적 뿐만 아니라 건축사적으로도 그 희소성이 인정되는 만큼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보임
- 성당 측에서 추가적으로 발굴한 고증자료 등을 근거로 하면, 증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부 외관상의 변화 역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 역시 50년이 경과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0.6.4.)

- 본 성당은 속초시가 갖는 역사적 성격과 시대적, 사회적 의미를 온전하게 담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골롬반 외방선교회가 짓고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평성당이나 묵호성당처럼 표준 설계에 의해 지어지지 않음에 따라 건물의 원 모습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6.4.)

- 속초 동명동성당은 6·25전쟁 기간 중 미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지역에 위치하였으며 또한 당시 미군정 하에 지방자치권이 인정되었던 특수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건립되었다는 측면에서 희소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천주교 및 지역사적 측면에서의 상징성 및 역사성과 함께 본당 건물의 건축적 내력 등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건축사적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증축된 면적이 비교적 크고 그로 인해 평면 형태뿐만 아니라, 구조체에 물리적인 변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6.4.)

- 동명동성당은 한국전쟁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립되었으며,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등록문화재의 등록 여건상 형태와 재료, 공간적 변형이 크고, 주요구조부의 원형보존 판단이 어려운 점에 미루어 등록기준에 미흡하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